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부설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연구소는 스포츠과학연구소 및 생활체육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스포츠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더 나아가 스포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스포츠 산업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운동에 의한 생리학적 반응, 변화와 적응을 조사
2.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 국민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조사
3. 운동선수의 운동능력 발달과 향상을 돕는 인자들을 조사
4. 위탁연구나 스포츠·체육 정보의 수집 보급, 국내·외 스포츠 학술 교류등의 역할을 수행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사업

제 4조(위치) 본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 5조(규정의 변경) 본 연구소 규정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 6조(조직) 본 연구소는 제 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직을 두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포츠 생리학 연구부
2.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연구부
3. 생활체육 및 스포츠이벤트 연구부

제 7조(임원) ①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연구부장 : 약간명
3. 운영위원 : 약간명
4. 간 사 : 1명

②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연구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소원) ①본 연구소 소원은 연구원, 연구조교, 연구조수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연구원은 본 대학교 체육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소의 연구목적에 필요한 경우 상당한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소장이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연구조교, 연구조수 및 직원은 필요에 따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전임교원을 제외한 연구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9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조(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및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 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사업계획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업 및 예산 • 결산

제 13조(재정) ①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경비로 충당한다.

1. 교내·외 연구비 및 용역비 등의 연구보조비
2. 본교의 운영지원비
3.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②전항 제 1호의 연구보조비 요율은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운영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 14조(사업계획)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15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 부터 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